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5 - 99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대응 약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4 및 6)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되어 마약류로 관리하고자 하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등 7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10번란부터 제113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N-Pyrrolidino protonitazene)	2-[(4-Propoxyphenyl)methyl]-5-nitro-1-(2-pyrrolidin-1-ylethyl)-1H-benzimidazole
111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N-Pyrrolidino metonitazene)	2-[(4-methoxyphenyl)methyl]-5-nitro-1-(2-pyrrolidin-1-ylethyl)-1H-benzimidazole
112	에토니타제피프네 (Etonitazepipne)	2-[(4-Ethoxyphenyl)methyl]-5-nitro-1-(2-piperidin-1-ylethyl)-1H-benzimidazole
113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N-Desethyl isotonitazene)	N-Ethyl-2-[[4-(1-methylethoxy)phenyl]methyl]-5-nitro-1H-benzimidazole-1-ethanamine

별표 4에 제4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헥사히드로칸나비놀 (Hexahydrocannabinol).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6,9-Trimethyl-3-pentyl-6a,7,8,9,10,10a-hexahydrobenzo[c]chromen-1-ol
----	--	--

별표 6에 제83번란부터 제84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	에토미데이트 (Etomidate)	ethyl 3-[(1R)-1-phenylethyl]imidazole-4-carboxylate
----	-----------------------	---

84	렘보렉산트 (Lemborexant)	(1R,2S)-2-{[(2,4-Dimethylpyrimidin-5-yl)oxy]methyl}-2-(3-fluorophenyl)-N-(5-fluoropyridin-2-yl)cyclopropanecarboxamide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83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